

의안번호	2200924
의 퇴 인	민홍철 의원
회 답 일	2024. 7. 10.
추 계 번호	24B1161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수립, 국제물류진흥위원회 설립·운영 등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3,000만원(연평균 4,600만원) 이상으로 추계 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200	—	—	—	—	200	40
국제물류진흥 위원회 (안 제42조)	6	6	6	6	6	30	6
계	206	6	6	6	6	230	46

주: 1. 향후 기본계획 용역비 증감 및 실제 위원회 구성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6조(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8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4	안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음(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2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함(제6항)	의무규정
6	안 제23조(토지수용)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수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7	안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8	안 제26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30조(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조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조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0	안 제34조(세제 및 자금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물류시설·제조시설·편의시설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음. 이 경우 감면 요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35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재량규정
12	안 제38조(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의 설치·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플랫폼의 설치·운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3	안 제42조(국제물류진흥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제물류진흥위원회를 둔(제1항) 1. 국제물류진흥지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5.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국제물류진흥지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의무규정
14	안 제43조(국제물류진흥청의 설립 등)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관리·운영하고 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진흥청을 설립함. 이 경우 국제물류진흥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립함(제1항) 국가는 국제물류진흥청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47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국제물류진흥청장 및 국제물류진흥지역 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2	안 제6조(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3	안 제8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안 제10조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재원 조달방법, 환경보전계획 등을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의 위치·면적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해당 사항들의 산정을 위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실시계획 수립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수행하며,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의 위치·면적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부 실시계획 수립에 소요될 비용 등 추정 곤란
5	안 제2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어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대상 지역 및 개발 계획 등을 알 수 없어 의제되는 인가 및 허가를 예측할 수 없음
6	안 제23조(토지수용)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의 위치·면적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토지수용 관련 비용 예측 불가
7	안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의 위치·면적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환지 관련 비용 예측 불가
8	안 제26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의 위치·면적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조성원가 등을 추정할 수 없음
9	안 제30조(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의 위치·면적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발 단계에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규모 예측 불가
10	안 제34조(세제 및 자금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의 위치·면적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 및 자금지원의 대상이 될 입주 기업 예측 불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35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의 위치·면적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국제물류진흥지역 조성 관련 기반시설 지원 비용 추계 불가
12	안 제38조(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의 설치·운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구축할 정보플랫폼의 수준 등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의 설치·운영 비용 추계 불가
13	안 제42조(국제물류진흥위원회)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14	안 제43조(국제물류진흥청의 설립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제물류진흥청 규모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어 비용 추계 불가
15	안 제47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위탁 사무 및 대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부재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6조의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수립, 안 제42조의 국제물류진흥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제정안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1차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국제물류진흥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참고하

여1)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10명 위촉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으로 1인당 30만원씩²⁾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회의를 연 2회씩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기타 회의 장소 대여 및 회의 비품 마련 등은 국토교통부의 기존 회의실을 활용하거나 이미 편성된 기본경비에 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³⁾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사례를 참고하면,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억원으로 추계(연평균 4,000만원)
 - 2021년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 (국토부 1억원, 해수부 1억원)

[표 2]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200	-	-	-	-	200	40

주: 향후 용역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국토교통부 국가물류정책위원회(2008.2.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 23명으로 운영. 최근 1년간(2022.7.~2023.6.) 회의 2차례 개최) 운영 사례 참고
2)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3)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국제물류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2조)

- 위촉직 위원 수에 회의수당과 회의횟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0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약 600만원)
 - 위원수(10명) × 회의참석수당(30만원) × 회의횟수(2회/연) × 5년 = 3,000만원

[표 3] 국제물류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제물류진흥위원회	6	6	6	6	6	30	6

주: 위촉직 위원은 총 10명, 수당 단가는 30만원으로 가정하고 회의 횟수는 매년 연 2회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한 것으로, 실제 위원 구성과 수당 단가 및 회의 개최 횟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